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25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김문수 · 권향엽 · 김준혁
조계원 · 장종태 · 양부남
정진욱 · 이주희 · 황명선
염태영 · 이광희 · 김 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적인 구조를 해소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p> <p style="padding-left: 20px;">· ② (생략)</p> <p><신설></p>	<p>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p> <p style="padding-left: 20px;">·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